

새로 改正 공포된 科學技術振興法

(法律 제4402호, 1991년 11월22일자)

第1條(目的) 이 법은 科學技術진흥에 관한 기본施策 및 綜合計劃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과학화와 經濟·產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基本施策의 강구) 국가는 국민의 자발적인 과학기술연구활동을 장려·육성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산업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新技術을 보급·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3條(綜合計劃의 수립·시행) ① 科學技術處長官은 中·長期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된 科學기술振興綜合計劃(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 조정·관리한다.

1. 과학기술연구개발계획
2. 과학기술인력개발계획
3. 과학기술투자계획
4. 과학기술정보유통계획
5. 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 설립·육성계획
6.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 촉진계획
7. 국제과학기술협력계획
8.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 촉진에 관한 계획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계획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長과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관리한다.

第4條(科學技術豫測) ① 科學技術處長官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정기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② 科學기술處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에 관한 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기타 公·社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기타 公·私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5條(綜合科學技術審議會) ①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과 과학기술관련부처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綜合科學技術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기타 관련중요정책의 조정
2.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소요예산의 종합조정
3. 국가적인 중요연구개발사업의 선정
4. 과학기술의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5. 과학기술인력개발에 관한 중요계획 및 관련정책의 조정
6. 중요한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증진
7. 중요한 기술개발의 촉진 및 관련제도의 발전
8. 과학기술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의 촉진
9.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 촉진
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國務總理가 되고, 부의장은 經濟企劃院長官이 되며, 위원은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者(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된다.

⑤ 심의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처 장관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사전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되, 간사위원이 이를 관장한다.

⑧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條(審議會議決事項의 적극 추진등)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관련과학기술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7條(科學技術研究開發) 정부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조정·관리하고, 당해 업무수행의 기준이 될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체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第8條(科學技術人力開發)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기술훈련의 촉진, 과학기술자의 확보·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한다.

第9條(科學技術投資의擴大) ①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효율화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소요예산 또는 매출예정액에 適正比率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해당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경

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③ 정부는 기업의 과학기술투자확대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10條(科學技術情報의 振興)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한다.

1.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육성
2.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계화
3.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의 도입·개발·활용과 정보처리기술인력의 養成
4.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보산업의 육성

第11條(協同研究開發의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산업체·학계·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중요한 국가적인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연구개발기관의 長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상호교류를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기관간에 상호교류되는 과학기술자는 상호교류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第12條(科學技術協力)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법인·단체와의 科學기술협력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종합적인 계획을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시행을 조정·관리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촉진·지원
2. 과학기술정보 및 과학기술자의 국제교류
3. 과학기술관계 국제회의의 개최·참가

4. 국제과학기술정보수집의 지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 13 條(科學技術에 대한 國民의 理解增進施策講究) ① 정부는 새롭고 다양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受容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할法人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第 14 條(科學技術振興基金)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2.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④ 기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운용·관리되며,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 15 條(科學技術財團)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

한 연구개발능력의 배양,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국제교류의 증진 등을 통한 과학기술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財團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科學技術財團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第 16 條(技術評價 및 技術基準) ①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문화 등 제부문에 대한 便益增進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제정·시행을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대상기술의 범위 및 평가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제정·시행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 17 條(科學技術專擔要員의 지정) ① 심의회의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및 道知事는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진흥에 관련된 업무총괄 및 대외협의를 담당할 과학기술전담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학기술전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 18 條(褒賞) 정부는 과학기술에 관한 발명·연구·개발·응용 또는 그 진흥 및 기업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第 19 條(科學技術法人·團體 등에 대한 보조)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附 則

i)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科學技術振興法 改正理由

'90년대의 國家發展을 선도하게 될 汎政府의 차원의 중요핵심문제로서 과학기술진흥업무를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종합계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綜合科學技術審議會의 심의·조정기능을 보완하여 그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여,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產·學·研 협동연구개발체제를 강화하며, 새롭게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수용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는 등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제반시책 및 제도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술평가 및 기술기준의 제정·시행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불필요하게 된 科學技術振興委員會 및 과학기술자의 겸직제도 등을 삭제·정비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1. 科學技術處長官은 중·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의 일환으로서 科學技術綜合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동 종합계획의 내용에 과학기술투자계획, 과학기술정보유통계획, 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의 설립·육성계획, 산업체·학계 및 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촉진계획 등을 새로이 추가함.
2. 綜合科學技術審議會의 심의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17인에서 21인으로 증원하고, 동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새로이 과학기술정보생산·유통 및 활용의 촉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동 심의회에 副議長制를 신설하여 이를 經濟企劃院長官이 맡도록 하고, 심의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관련과학기술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그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은 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4.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효율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요예산 또는 매출예정액에 적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領을 해당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5. 정부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산업체·학계·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6. 과학기술처장관은 중요한 국가적인 연구개발문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상호교류를 권고·알선할 수 있고, 당해 과학기술자는 상호교류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7. 정부는 새롭고 다양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수용능력을 신장시켜 주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시책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게 할 범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동 범인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8.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 등 제부문에 대한 便益增進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을 제정·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